

교육품질혁신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0.11.30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교육품질혁신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연구협력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교육품질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3.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는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를 둔다.
4.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미래교육혁신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30>

제3조 (기능)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 교육성과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학 수요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5. 대학 강의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 대학 중요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직무) 교육품질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

제5조 (회의) 교육품질혁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품질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연간 교육과정 운영정책 분석 및 교육성과 심의를 위해서 매 학년도 말 개최 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제6조 (구성)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각 학부(과)장, 기초교양교육원장, 영어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교양교육 증진을 위해 교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4.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교무처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기능)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교양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교양교육원, 영어교육원 및 학부(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직무)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2. 교외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

제9조 (임무)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추진사항을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2. 매 학년도말 추진실적의 결과를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회의)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연간 교양교육과정 운영정책 분석 및 교양 교육성과 심의를 위해서 매 학년도 말 개최 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제11조 (구성)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각 학부(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전공교육 증진을 위해 교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4.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교무처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기능)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전공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 전공교육과정 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부(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직무)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2. 교외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

제14조 (임무)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추진사항을 교육품질 혁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2. 매 학년도말 추진실적의 결과를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회의)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연간 전공교육과정 운영정책 분석 및 전공 교육성과 심의를 위해서 매 학년도 말 개최 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제16조 (구성)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비교과교육을 운영 중인 각 부서 팀장 및 실장 8명 내외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2. 비교과교육 증진을 위해 교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교육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4.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에는 '학습역량지원' 분야와 '취·창업지원' 분야, '진로·심리 상담지원' 분야로 구성한다.
5.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교육성과관리센터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1.30>

제17조 (기능)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비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습역량지원' 분야와 '취·창업지원' 분야, '진로·심리 상담지원' 분야에서 상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직무)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교외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

제19조 (임무)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장은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추진사항을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2. 매 학년도말 추진실적의 결과를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3.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는 '학습역량지원' 분야와 '취·창업지원' 분야, '진로·심리 상담지원' 분야로부터 학기별로 비교과교육실적을 제출받아 교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4. '학습역량지원' 분야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총괄하며 교육관련 분야의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점검한다.<개정 2020.11.30>
5. '취·창업지원' 분야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총괄하며 취·창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점검한다.<개정 2020.11.30>
6. '진로·심리 상담지원' 분야는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에서 총괄하며 진로·심리 상담지원' 분야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제20조 (회의)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연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정책 분석 및 비교과 교육성과 심의를 위해서 매 학년도 말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기 타

제2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